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7.12.8(금) / 총1매(본문1)
담당 부서	건설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영한, 사무관 정창대, 주무관 김석훈 • ☎ (044) 201-3504, 3514, 3515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연면적 200㎡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제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안 국회 통과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(민홍철 의원 대표발의, '17.1.24.)하고,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(이현승 의원 대표발의, '17.8.31.)하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안이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

- 기존에는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㎡이하,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㎡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있었으나,
- 앞으로는 연면적 200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,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㎡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.

②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 확보

- 기존에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,

-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**도급계약을 해지**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,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**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려는** 경우들이 있었다.

* 하도급률이 82% 미만이거나 예정가격대비 60% 미만인 경우, 발주자가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, 하수급인의 시공능력·신뢰도 등을 심사하여 90점에 미달할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요구하는 제도

- 앞으로는 **공공공사 발주자가**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**요구한 경우** 수급인은 **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**하고는 이를 **이행토록 의무화**하고,

-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**시정명령**을 하고,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**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.

- 이번 개정안은 **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**된다.

※ ①번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 (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,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,
②번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안이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하여 **다중주택, 다가구주택** 등의 **부실시공을 방지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정창대 사무관(☎ 044-201-35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